

한진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제정 2019년 3월 14일

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, 기능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,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과 경력 및 역할 수행 정도를 판단하여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.

제 4 조 (구성)

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(이하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
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,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 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위원장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참석자 중 선임 위원, 연장자의 순으로 주재하기로 한다.

제 6 조 (소집권자)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소집한다.

제 7 조 (소집절차)

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소집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회의 1 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①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.
- ③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,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8 조 (부의사항)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- 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9 조 (결의방법)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10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1 조 (간사)

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한다.

제 12 조 (의사록)

-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3 조 (통지의무)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 14 조 (경비)

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 15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[부칙]

1. 이 규정은 2019 년 3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20 년 2 월 7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24 년 11 월 7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